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28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213,400원, 농어촌특별세 1,770,800원, 지방교육세 1,327,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가. 원고는 2011. 10. 10.경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 소재 [redacted]역사 건축물 2,202.02㎡(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역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5.경 [redacted]유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역사에 관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redacted]유통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0. 10.경부터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매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0.경 이 사건 역사 중 29㎡를 아래 표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매장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순번	업체명	용도	면적(㎡)	최초입주일
1	자판기	자판기	10.05	2011. 10. 10.
2	A	커피전문점	26.40	2011. 10. 10.
3	B	음식점	47.70	2012. 2. 1.
4	C	매점	54.00	2013. 7. 2.
5	한국전자금융	현금인출기	4.00	2011. 10. 10.
6	D	렌터카	25.00	2011. 10. 10.

다. 피고는 2014. 2.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은 역 시설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수익사업이고, 이 사건 역사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28,624,860원, 농어촌특별세 2,044,620원, 지방교육세 1,521,950원 합계 32,191,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9.경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9. 15.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 정한 '직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사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인 원고가 같은 항에 정하고 있는 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등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이상 위 조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위 표 순번 3, 4 기재 각 매장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의 기산일은 각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데도 피고가 2011. 10. 1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 11. 10.을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하고 이를 원고에게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6.경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재계산하여 가산세 1,879,67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된 2014. 2. 11.자 부과처분(취득세 27,213,400원, 농어촌특별세 1,770,800원, 지방교육세 1,327,560원, 각 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자판기, 커피전문점, 음식점, 매점, 현금인출기 등의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은 역사시설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은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에 정해진 철도역사개발사업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이유는 당해 부동산이 철도역사개발사업 시설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 및 같은 법 제94조의 '직접사용'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철도역사개발사업 시설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한국철도공사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역사 내에 설치되어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에 정한 역 시설로서, 이를 설치·관리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역 시설 개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역사를 취득한 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시설을 원고의 역 시설 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는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등)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2

별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재계산

과세 구분	과세물건 및 정당세액				기납부 세액		추 징 할 세 액								
					신고과표	과표차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압주일	면적	취득가액	정당세액	납부일자	납부세액	본세	가산세	계	본세	가산세	계	본세	가산세	계
당초	2011.10.10	167.15	710,830,876	19,903,260	0	710,830,876	19,903,260	8,721,600	28,624,860	1,421,660	622,960	2,044,620	1,137,320	384,630	1,521,950
수정	2011.10.10	65.45	278,386,110	7,793,410		278,386,110	7,793,410	3,415,070	11,208,480	556,670	243,940	800,610	445,330	106,080	551,410
	2012.02.01	47.7	202,851,527	5,679,840		202,851,527	5,679,840	2,294,650	7,974,490	405,700	82,760	488,460	324,560	65,210	390,770
	2013.07.02	54	229,643,238	6,430,010		229,643,238	6,430,010	1,600,420	8,030,430	459,280	22,450	481,730	367,420	17,960	385,380
합계		167.15	710,830,876	19,903,260		710,830,876	19,903,260	7,310,140	27,213,400	1,421,650	349,140	1,770,800	1,137,310	190,240	1,327,560
환급세액				총합계	1,879,670				1,411,460			273,820			194,390

□ 경산역사 과표산출내역
① 공사총금액 : 9,364,426,000원
② 연면적 : 2,202.02㎡
③ 영대면적 : 167.15㎡(TMO 등 제외)
◆ 안분내역 : ①*③/②=710,830,876원

기산일	2011-11-10	2014-01-12	794		자체결과	당초	32,191,430	확 정	당초	32,191,430
	2012-03-09	2014-01-12	680			수정	30,311,760		수정	30,311,760
	2013-08-02	2014-01-12	163			환급	1,879,670		환급	1,879,670
환급가산금	2014-02-27	2014-03-14	16	3.4%		환급가산금	2,790		환급가산금	35,040
	2014-03-15	2014-10-16	216	2.9%			32,250			
						총 환급액	1,914,710		총 환급액	1,914,710